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운영 방향

양태선*

농림부 소비안전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농림부 소비안전과

1. 개요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용수, 종자, 농약, 비료 등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복지·건강관리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경감시킨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에서 수확 후 처리과정까지 농약·중금속·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농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U, 미국, 캐나다, 칠레 등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수출상대국의 식품 안전성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써 GAP를 도입하고 있다.

2. 국내 도입

우리나라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 9월 약용작물에 GAP 도입을 결정하였고, 2003년 6월에는 모든 농산물에 GAP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올해는 신선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류에 대하여 시범사업과 아울러 2006년 시행을 목표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GAP에 대한 이해

(1) 농약·비료의 사용

GAP는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수준 이하로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농약·비료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행농법과 유사하지만 사용 전에 농약·비료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약·비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보관 장소, 살포장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용 시 이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겨 당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행 농법과 차이가 있다. GAP에서는 농약사용은 종합병충해관리(IPM)를, 비료사용은 종합비료관리(INM)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농약·비료관리를 통하여 허용수준 이하의 농약·비료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 연락처자

(Fax : +82-2-503-7277, E-mail : yangts@maf.go.kr)

(2)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관리

GAP지침은 수확을 전후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수확 전 단계의 토양·물 등 환경관리 및 비료·농약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과 ②수확 후 단계의 화학제 및 시설·장비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이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일관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 GAP이다.

(3) 농업환경관리가 필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이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수는 먹는 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토양·수질은 현시점에서의 오염여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오염이력, 주변의 오염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GAP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농장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설도 필요하다.

(4) 농작업 인력의 위생·보건

과일·채소류 등에 식중독 유발균이나 기생충이 오염되는 원인으로 농작업자도 포함이 된다. 농작업시 작업자의 위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특히 질병에 걸린 작업자는 농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GAP에 포함되어 있다.

(5) 이력추적이 가능한 기록관리

GAP는 이력추적이 필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한 이력추적뿐 아니라 농작업, 특히 안전성과 관련이 되는 작업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GAP 농산물에서 문제발생시 신속한 Recall과 원인규명을 할 수 있다.

(6) 참여농업인의 교육

GAP 지침은 농약·비료관리 뿐 아니라 위생, 보건, 환경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 GAP 지침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GAP 참여농가는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

4. GAP 도입·정착을 위한 정부의 시책

정부에서는 GAP의 정착을 위하여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 중이며, GAP 채택·관리지침 개발, Traceability 시스템 구축, 교육체계 마련, 위생기반 구축 등의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GAP 근거규정 마련

현재 개정중인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GAP를 인증제도로 도입하여 GAP과정을 거쳐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농산물과는 차별화된 생산·관리과정을 거쳤음을 알기 쉽게 나타내어 소비자 안심을 지향한다. GAP 인증을 통해 안전한 국산농산물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소비자의 국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GAP 재배·관리지침 개발

GAP 재배·관리지침은 품목군에 대한 지침과 품목별 지침으로 나눌 수 있다. 품목군에 대한 지침은 과일·채소류에 대한 지침, 약용작물에 대한 지침, 곡류에 대한 지침 등으로 품목군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품목군에 따라서 소비형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 석용하는 과일·채소와 고온에서 끓인 후 석용하는 약용작물에 대한 지침이 동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면 이에 따라 각 품목별로 사용가능한 농약·비료 및 재배·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82개 품목별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2005년까지 96개 품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3) Traceability 시스템

이력추적관리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력추적관리 자체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GAP 재배·관리지침의 내용을 관리하게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안전성 확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10월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산code를 마련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 교육체계 마련

미국의 경우 GAP 도입을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GAP 교육체계 마련이다. 정부는 2004년 상반기에 유럽전문가를, 하반기에는 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GA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과정개발, 교육시설 및 기자재 마련 등 교육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까지 마련되는 GAP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2005년부터는 실질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GAP 교육은 시행초기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8년까지는 GAP 참여농가가 큰 어려움 없이 GAP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위생기반 구축

GAP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수질기반마련, 수확 후 위생시설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토양·수질에 대한 개선은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나, 수확 후 위생시설 기반 마련은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이 없어 GAP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수확 후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는 위생설비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별기고 게재 안내

본 특별 기고는 2004년 10월 7~8일간 추계학술발표회의 workshop 주제인 “농산물 안전성과 GAP”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제8권 4호부터 제9권 2호에 걸쳐 다음과 같이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8권 4호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운영 방향

제9권 1호 : GAP제도 도입에 따른 표준재배지침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농산물 생산 이력제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제9권 2호 : 잔류농약의 기준설정과 GAP

GAP 구축을 위해 위해 요소관리